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5年 6月 24日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운 영 위 원 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 영 위 원 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규정 위반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여 이를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2015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는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5. 6. 11(목) ~ 2015. 6. 19(금)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

○ 마포구의회 사무국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운 영 위원회	[위 원 장] 김영미 [부위원장] 이학래 [위 원] 김윤정, 문정애, 신종갑, 유호렬, 허정행	마포구의회 사 무 국	운 영 위원회실	김용범	노영구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감 사 방 법	비 고
2015. 6. 12(금)	의회사무국	운 영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모의의회 개최
- 의회 개원행사
- 의원 결산간담회
- 의원 교양강좌
- 의회 홈페이지 관리
- 의회보 발간
-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모의의회와 관련하여 관내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해주기 바람.
- 작년 구의회 개원행사시 행사 후에 바로 식사를 하는 관계로 다과 음식들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 개원1주년 기념행사때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과 음식은 줄이고 내실 있는 행사로 준비해주기 바람.
- 연말 의원 결산간담회가 몇몇 의원 중심의 자리가 아니라 전체 의원 개개인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람, 의원 교양강좌와 관련하여 강좌주제나 강사선정시 사전에 의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의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기 바람.

- 메르스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구 보건소에 상황실이 설치되었는데 이에 관한 안내가 의원들에게 없었음. 관내 중요 정보나 홍보 사항들을 의원들에게 알려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메르스 예방 관련 공지 사항을 팝업으로 올려주기 바람, 의회청사내 엘리베이터 등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홍보 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해주기 바람.
- 의회보 발간과 관련하여 몇몇 특정 의원에게만 편향되게 편집된 듯 한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음. 전체 의원들의 활동상황이 고르게 실릴 수 있도록 제작하여 주기 바람.
- 작년도 의원 국내여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였는데,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무국에서는 사전에 의원들에게 의정연수 자료나 세미나, 워크숍 등 정보를 제공해서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람.
-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운영위원회 직무에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반적인 현안 사항들에 대해 특정 의원에게 편향된 의사결정이 아닌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사전에 협의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기 바람,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자료 제공 등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해 주기 바람.
- 금년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관련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되지 않아 의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 타구와 비교했을때 우리구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함. 의회 관련 행사 추진시 사무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좀더 소신을 가지고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람.

- 구의회 의원 개개인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동등한 주민의 대표자들임. 의회 관련 행사나 기타 의정활동을 하는 모든 부분에서 어느 특정의원 중심으로 의전이나 계획이 수립된다면 다른 의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으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기 바람.

나. 처리의견

-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15년 8월 7일 까지 의장(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